



**AALDEF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소액 재판소 안내**

**Workers' Guide to
NY Small Claims Court**

한인노동자프로젝트 소액재판소 안내

- 소액 체불임금, 변호사 없이 소액재판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I: 소액재판소에 대한 배경지식과 재판신청과정

한인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아시아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 알데프)**과 **청년학교(YKASEC)**의 한인노동자프로젝트에 문의하시거나, 노동부나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뉴욕 소액재판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Q. 어떤 사건들을 소액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소액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000달러 이하” “금전적 배상” 사건이라는 두 가지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5,000달러 이하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노동자 갑에게 주당 6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경우, 갑이 4주 동안 일했는데 A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A는 갑에게 2,400달러(=600달러*4주)의 임금을 체불한 것입니다. 이 경우 체불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 갑은 소액재판소에 고용주 A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배상을 위한 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선 소액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소송은 소액재판소를 통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갑이 1개월동안 무료로 일하는 대신 고용주 A가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가정할 경우, 갑은 소액재판소에서 “A는 갑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A로 하여금 약속대로 영주권 신청을 돕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금전적 배상을 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누가 고소할 수 있고 (원고), 누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피고)?

1) 원고: 18세 이상의 노동자가 소액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류미비자라도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 뉴욕주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뉴저지 포트리에 살면서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브롱스에 사는 노동자 갑은 A를 뉴욕 소재 소액재판소에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소하고 싶으면 뉴저지 소액재판소에서 해야 합니다.

고용주 개인 이외에도 고용주가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업체(노동자를 파견한 곳)와 근무업체(노동자의 실제 근무처)가 다른 경우에는 두 업체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성격이 다른 단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주와 고용업체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고용주(개인)와 고용업체(법인, 즉 기업이나 기타 단체) 양자 모두를 동시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갑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은 A와 A의 회사를 동시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 건수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Q. 어느 지역의 소액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뉴욕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는 다섯 개 보로(Borough) (맨하탄, 퀸즈, 브록클린, 브롱스, 스타튼 아일랜드)에 소재한 소액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거주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맨하탄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일했고 그 사업체의 소유권자인 고용주가 플러싱에 거주한다면, 맨하탄 카운티 소액재판소나 퀸즈 카운티 소액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퀸즈 카운티 소액재판소의 주소는 89-17 Sutphin Boulevard, Jamaica, NY 11435 입니다. 이 책자의 뒷면에 뉴욕시 소재 소액재판소의 주소가 모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소액재판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절차는 법원사무관 사무실(Clerk Office)에서 고소장(Statement of a Claim)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용주의 주소(주의: P.O. Box는 안됨)와 청구금액, 근무기간, 고소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일 경우 고소이유란에 “Failure to pay: salary” 라고 표시하십시오. 고용주와 고용업체를 동시에 고소할 경우 고소장을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끝나면 서명을 하고 제소료 현금 20달러(청구금액이 1500달러 이하일 경우엔 15달러)와 함께 법원사무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 통역이 필요하시면 고소장 제출시 한국어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영어로 “Korean interpreter, please(발음: 코리아인터프리터 플리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주와 고용업체를 동시에 고소할 경우에도 하나의 소송 사건이므로 제소료는 한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II: 재판준비와 재판 당일 유의사항

Q. 재판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무엇이든 수집해 두십시오. 관련자료가 문서일 경우에는 복사본 3부를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불체크(Check, 수표), 출퇴근전표(회사측이 작성한 근무시간기록표), 근무시간을 기록해둔 본인의 다이어리, 영수증 등은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증거문서나 증인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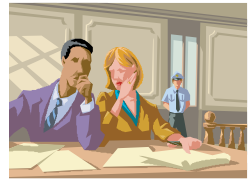
증거문서나 증인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문서나 증인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증인의 증언을 받아내거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인이나 제3자가 재판에 중요한 기록이나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소환장(Subpoena)을 소액재판소 사무관으로부터 발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란 증인에게 증언이나 소송당사자에게 필요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명령서입니다.)

Q. 소액재판소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판당일 전에 다른 소액재판을 방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을 방청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재판과 관련된 실수나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재판 당일 소액재판소 재판정에 가시면 다른 소송사건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법원 직원이 소송사건을 차례로 호명하게 되는데 본인의 이름이 불릴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소송인의 응답이 없으면 그 사건은 기각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Here” 라고 대답하시면 중재인에 의한 재판으로 가게 되고, “By the court” 라고 대답하시면 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판사(Judge)와 중재인(Arbitrator)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중재인에 의한 재판은 소송당사자(원고인 노동자와 피고인 고용주)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재인에 의한 재판은 판사에 의한 재판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중재인에 의한 재판은 당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종류의 재판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재인은 판사가 적용하는 법과 똑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중재인에 의한 재판은 판사에 의한 재판보다 덜 형식적이기 때문에 소송인은 상대적으로 긴장이 이완된 분위기에서 본인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재인에 의한 재판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인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정(Mediation)이란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재판 중 판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서기관(Court Clerk)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Mediation)을 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하기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리시다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당일 판사를 못 만나게 될 경우에는 법원서기관(Court Clerk)이 새로운 재판날짜를 정해줍니다.

소송당사자간에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은 보통 빠른 시일 내에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에서 노동자와 고용주는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본 소송사건에 대해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합의에 성공할 경우 소송인과 고용주는 강제력 있는(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문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위의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다리시다가 재판을 하시거나, 당일 재판을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날짜가 정해지고, 정해진 재판날짜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재판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 재판은 보통의 다른 재판들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원고(노동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간이 몇분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가장 중요하고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발언을 해야 합니다.

Q. 고용주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면?

재판 당일 피고(고용주)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자동적으로 원고(노동자)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여전히 판사나 중재인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게 됩니다.

II: 소액재판 후 후속조치

재판 후 법원은 소송인과 고용주에게 판결문(Notice of Judgment)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원고(노동자)가 승소할 경우,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청구금액과 제소료 그리고 집행관(Sheriff 혹은 Marshal)이 판결액 징수를 일차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원서기관(Court Clerk)은 피고(고용주)에게 판결문을 보냅니다. 고용주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기간 내에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직접 판결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고용주의 보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집행관(Sheriff 혹은 Marshal)으로 하여금 고용주의 재산을 압류해 판결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결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액을 받아내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3자가 고용주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으로부터 정보청구소환장(Information Subpoena)을 발부받아 제3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소환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법원서기관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집주인(Landlord)에게 고용주로부터 받은 체크(Check, 수표)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거래하는 은행에 고용주의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 항소

원고(노동자)가 패소하였을 경우, 항소하길 원하면 판결이 내려진 30일 이내에 심의요청(Notice of Appeal)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항소는 중재자(Arbitrator)가 아닌 판사(Judge)에 의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 항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항소를 하기 전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는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인 오류만으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제소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외에도 변호사 위임료 등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액재판소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소액재판을 통한 소송 제기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과정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전화 212-966-5932)이나 청년학교(전화 718-460-5600)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저임금 한국 이민 노동자들을 위해 일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법정 대변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AALDEF (전화 212-966-5932 내선 223) 이나 info@aaldef.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에 있는 소액재판소

- **New York County Civil Court:** 111 Centre St.
Room 322, New York, NY 10013; (646) 386-5484
- **Harlem Community Court:** 170 East 121st St.
New York, NY 10035; (212) 828-7558
- **Midtown Community Court:** 314 West 54th St.
New York, NY 10019; (212) 484-2711
- **Queens County Civil Court:** 89-17 Sutphin Blvd.
Jamaica, NY 11435; (718) 262-7123
- **Kings County (Brooklyn) Civil Court:** 141 Livingston St.
Brooklyn, NY 11201; (718) 643-7914
- **Bronx County Civil Court:** 851 Grand Concourse
Bronx, NY 10451; (718) 590-2693
- **Richmond County (Staten Island) Civil Court:** 927 Castleton Ave.
Staten Island, NY 10310; (718) 390-5421

안내서 기획: Rosa J. Cho

안내서 디자인 : Joseph Kepferle

협력 : 이정화, 성웅규, 조우영, 청년학교 (YKASEC)

This Guide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contribution of the
Lucius N. Littauer Foundation.

이 안내서는 Lucius N. Littauer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Workers' Guide to NY Small Claims Court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99 Hudson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13 • (212) 966-5932

Founded in 1974, the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 is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protects and promotes the civil rights of Asian Americans. By combining litigation, advocacy, education, and organizing, AALDEF works with Asian American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to secure human rights for all.

AALDEF focuses on critical issues affecting Asian Americans, including immigrant rights, civic participation and voting rights, economic justice for workers, language access to services, Census policy, affirmative action, youth rights and educational equity, and the elimination of anti-Asian violence, police misconduct, and human trafficking.

Get involved is an educational publication meant to answer basic questions.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AALDEF at (212) 966-5932.

© 2007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